

2014년 ..
충청남도청소년희망포럼



위기청소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일 시 | 2014년 4월 15일 (화) 14:00 ~ 17:00

장 소 | 천안YWCA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강당

주 관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4 충청남도청소년희망포럼

행사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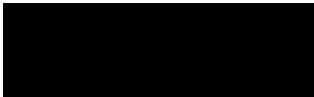
13:30-14:00	등 록	
1부		
14:00-14:0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 :	최 승 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팀장)
14:05-14:10	개 화 사	이 성 진((재)충남청소년진흥원장)
14:10-14:15	격 려 사	윤 영 우(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2부		
14:20-14:40	발 제 1	유 낙 준(대전광역시교육청 가정형 Wee센터장)
14:40-15:00	발 제 2	송 미 영(충청남도청소년정책 종합계획 수립연구위원)
	좌장 :	박 영 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5:00-16:00	지 정 토 론	- 새터민청소년분야 이 영 주 (드림학교 교감) - 가출청소년분야 이 철 이 (청로일시청소년쉼터 소장) - 범죄청소년분야 김 상 기 (충남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 청소년예산분야 진 경 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16:00-16:30		종합토론 및 총평
3부	정책전달식	
16:30-17:00		정책전달식 및 폐회

2014 충청남도청소년희망포럼
 “위기청소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차 례

발제 1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소회	7
	유낙준 센터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가정형Wee센터)	
발제 2	충남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23
	송미영 박사 (충청남도청소년정책 종합계획 수립연구위원)	
토론 1	새터민청소년분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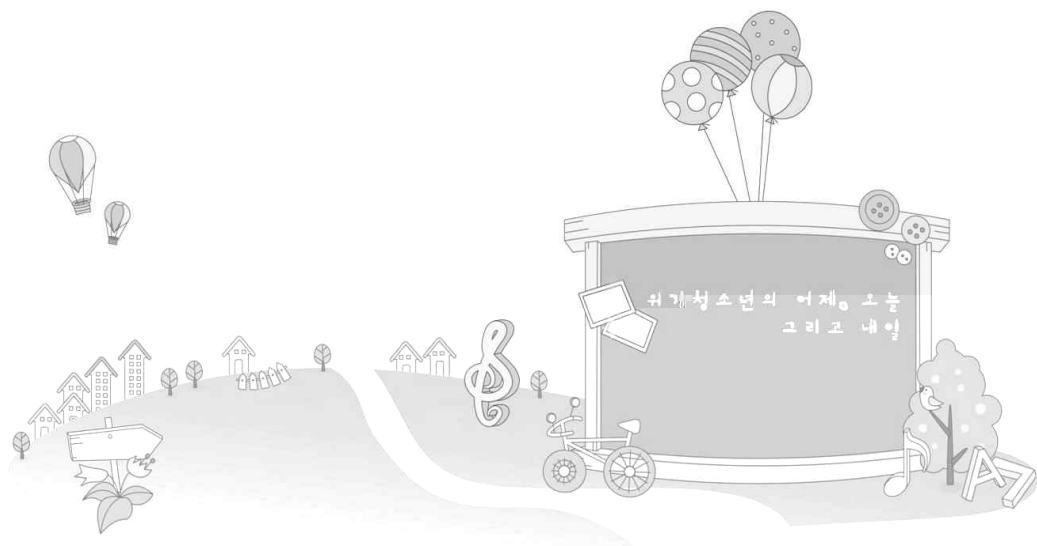




위기청소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발제자료 2

충남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

○

○

○

• •

•

• • • •

• •

•

• • •

○

○

○

○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추진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 체계 보강		
정책추진 기반 강화		

1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운영

○

. . .

○

○

○

연 도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4,200건	900건	1,000건	1,100건	1,200건	100%
	16회	4회	4회	4회	4회	
계	1,076	254	274	274	274	100%
국 비	538	127	137	137	137	50%
도 비	538	127	137	137	137	50%
시군비	-	-	-	-	-	-

○

.

○

. . .

.

○

○

○

구 분 \ 연 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60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100%
계	5,790	1,410	1,410	1470	1500	100%
국 비	2,895	705	705	735	750	50%
도 비						
시군비	2,895	705	705	735	750	50%

○

○

. . .

○

○

○

○

.

연 도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224명 2,680건	55명 650건	55명 670건	57명 670건	57명 690건	-
계	270	60	65	70	75	100%
국 비	135	30	32.5	35	37.5	50%
도 비	135	30	32.5	35	37.5	50%
시군비	-	-	-	-	-	-

○

○

○

○

○

○

○

구 분 \ 연 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34회 38,000건	14회 9,700건	14회 10,800건	15회 11,000건	15회 12,000건	-
계	46	10	11	12	13	100%
국 비	23	5	5.5	6	6.5	50%
도 비	23	5	5.5	6	6.5	50%
시군비	-	-	-	-	-	-

○

○

.

○

.

○

○

○

구 분 \ 연 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4,976	1,155	1,212	1,273	1,336	
계	1,958	476	486	496	500	100%
국 비	979	238	243	248	250	50%
도 비	979	238	243	248	250	50%
시군비	-	-	-	-	-	-

○

○

○

○

○

○

○

○

-

-

-

-

-

연 도
구 분

○

○

○

○

○

구 분 \ 연 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26개소	6개소	6개소	7개소	7개소	
계	3,478	788	800	940	950	100%
국 비	1,739	394	400	470	475	50%
도 비						
시군비	1,739	394	400	470	475	50%

○

○

○

○

○

연 도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64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계	6,500	1,550	1,600	1,650	1,700	100%	
국 비	620	140	150	160	170	50%	
도 비	620	140	150	160	170	50%	
시군비	5,260	1,270	1,300	1,330	1,360		100%

○

○

○

○

○

○

연 도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40회	10회	10회	10회	10회	100%
계	26.0	6.5	6.5	6.5	6.5	100%
국 비	13.2	3.3	3.3	3.3	3.3	50%
도 비	12.8	3.2	3.2	3.2	3.2	50%
시군비	-	-	-	-	-	-

○

○

○

○

○

○

구 분 \ 연 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8명	2명	2명	2명	2명	
계	193.6	46.8	46.8	50	50	100%
국 비	193.6	46.8	46.8	50	50	100%
도 비						
시군비	-	-	-	-	-	-

○

○

○

○

○

○

연 도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64개단체	16개단체	16개단체	16개단체	16개단체	
계	240	60	60	60	60	100%
국 비	-	-	-	-	-	-
도 비	240	60	60	60	60	100%
시군비						

○

○

○

○

○

구 분 \ 연 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14개소		1개소	6개소	7개소		
계	1,260		200	500	560	100%	100%
국 비	-		-	-	-	-	-
도 비	930		200	350	380	100%	50%
시군비	330		-	150	180	-	50%

○

○

○

○

○

○

구 분 \ 연 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9명		3명	3명	3명	
계	540		180	180	180	100%
국 비						
도 비	540		180	180	180	100%
시군비	-		-	-	-	-

○

- . . .
- .
-
-
-
-

구 분 \ 연 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1회	1회				
계	8.5	8.5				100%
국 비	4.3	4.3				50%
도 비	4.2	4.2				50%
시군비						-

-

○

○

○

○

연 도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12회	1회	3회	4회	4회	
계	51.0	3	13	15	20	100%
국 비	1.5	1.5				
도 비	49.5	1.5	13	15	20	100%
시군비						

○

○ .

○ .

○

○

○

○

연도 구 분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비 고 (부담비율)
사업량	4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
계	450		150	150	150	100%
국 비	-		-	-	-	-
도 비	450		150	150	150	100%
시군비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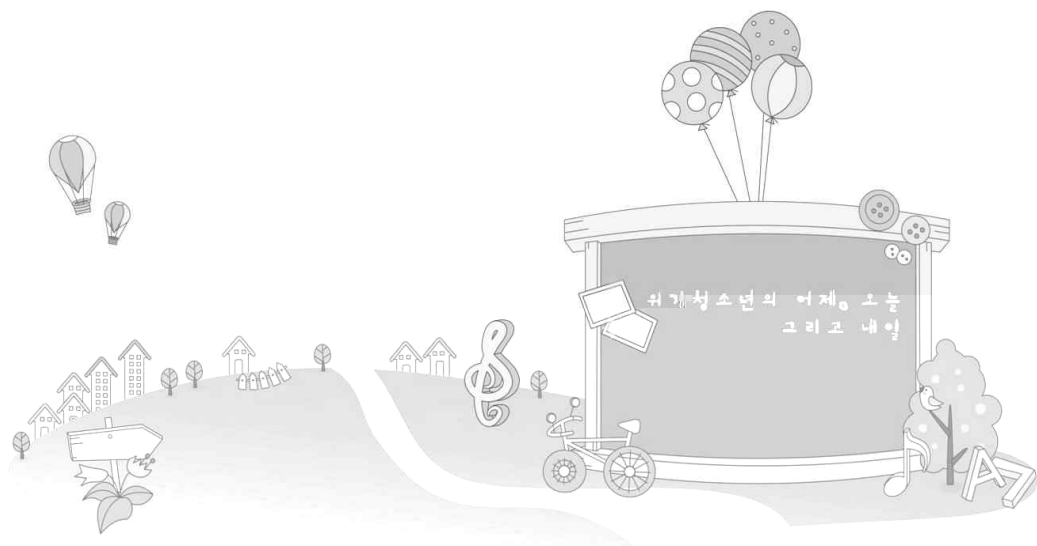
• • • •

위기청소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자료 1

새터민청소년분야

**통일 대박 론이 대두되고 있는 즈음에
학교 밖 탈북 청소년들은?**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현황 >

구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내용	급식관리비 학교 일반운영비 기숙사 관리비 교육활동지원비 기본적 교육활동비 (교과활동, 체험활동) 선택적 교육활동비 (방과후활동, 직업진로교육)	급식관리비 시설유지비 기숙사 관리비 일반행정 관리비 프로그램 개발진행비 인건비
지원 대상	한겨레중고등학교 ¹⁸⁾	9개소의 대안교육시설 ¹⁹⁾
2014년도 지원 예산안	19억원	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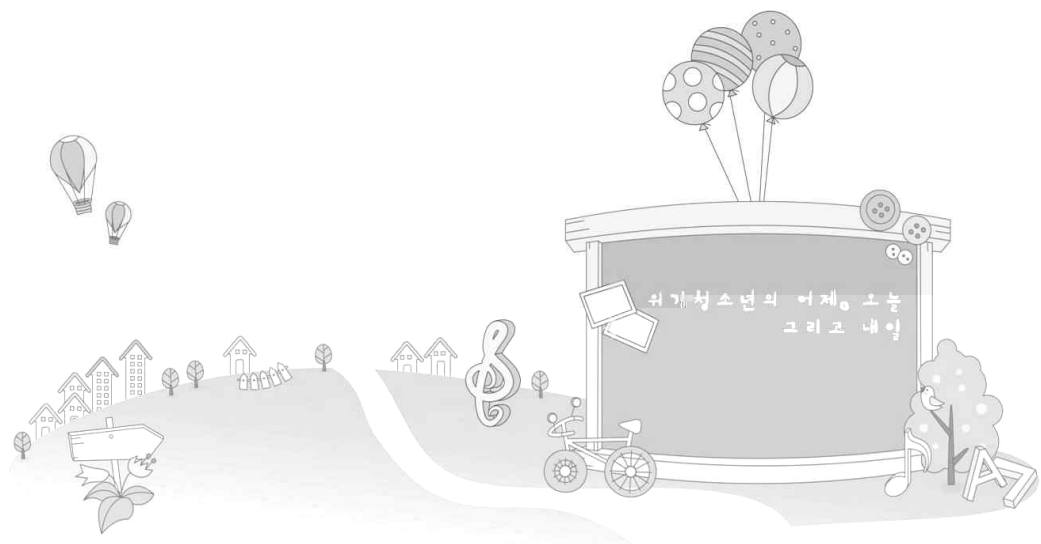
* 자료: 통일부

위기청소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자료 2

가출청소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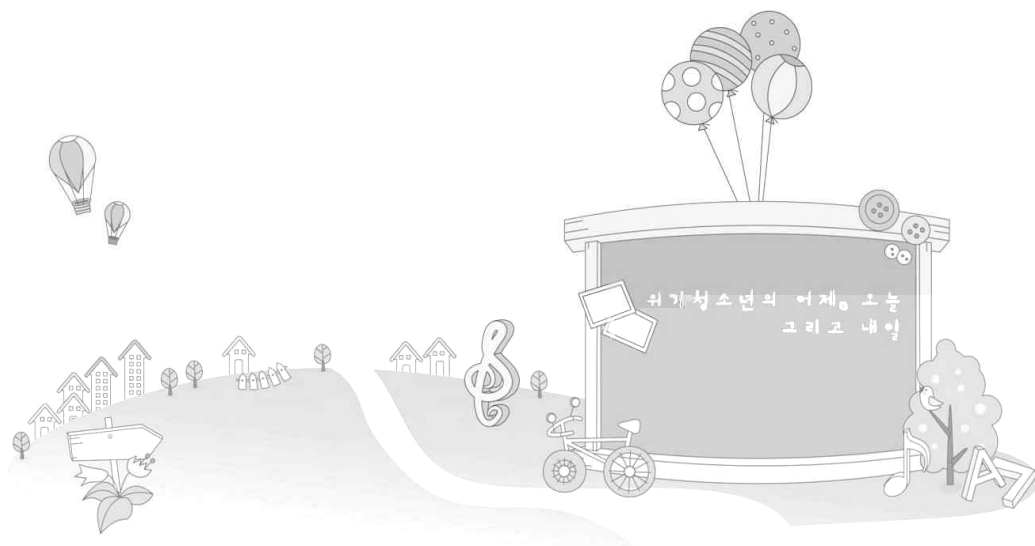
가출 청소년들과 16년 동거생활을 경험으로



위기청소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자료 3

범죄청소년분야 청소년 범죄 다이버전



청소년범죄 다이버전



충남지방경찰청

목 차

1. 다이버전(Diversion)이란?
2. 소년법 현황 및 처리절차
3. 비행소년 통고제도
4. 경찰의 다이버전
5.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1 다이버전 (Diversion) 이란 ?

● 청소년의 특성

'질풍노도'의 시기 (강한바람 & 성난파도) →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극단적인 사고와 과격한 감정 정서적인 동요가 심함	가정교육 기능 약화 (과잉보호, 해체, 폭력 용인하는 가정문화 등) 입시경쟁문화, 인성교육 부재 음란물 등 유행문화, 범죄 문화 확산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 집단 형성 (왜곡된 방식으로 욕구불만 표출, 씨름형성)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 다양한 갈등 → 일탈행위의 결과	모방심리로 범죄에 쉽게 감염 → 성인처럼 습관화 되지 않아 규범에 순응할 수 있는 변화·개선 가능성도 큼

● 소년범 다이버전 왜 필요한가?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형집행이 낙인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힘들게 할뿐 아니라 자아의식을 왜곡시켜 재범으로 나아가게 함 → 다이버전 모색
낙인이론의 산물로서,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벌이 갖는 기능상의 한계와 과잉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청소년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 등으로 사법처리 대체 → 수용시설이 아닌 사회내 처우로, 형사제재 최소화 / 수단 다양화
소년범의 경우 사소한 비행에서 흉악범죄로 발전하므로 비행 초기에 교육적·보호적 관점에서 경미초범을 선도·보호하여 건전한 육성
유영철 : 고2 시절 가벼운 절도로 소년원에 수감된 후 특수절도·성폭력· 살인 등으로 중범죄화
신창원 : 어린시절 누가 날 잡아주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기中) 소년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어린시절 교육과 환경에 따라 악마도 천사도 될 수 있다.

● 다이버전의 意義

개념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식적 사법처리를 대신하여 지역사회의 선도 및 관찰 등으로 처벌을 전환시키는 정책
연혁	1965년 <u>미국</u>에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기존의 사법정책으로는 더 이상 증가하는 청소년의 재범률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 '연방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 해결 모색 수사 초기단계의 소년범에 대해 선도정책을 실시, 형사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고, 경미초범 소년을 분리시켜 재범방지 → 1968년 '소년비행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법률' 제정 → 미국 전역 확대 → 1984년 카이로 국제학술대회, 각 나라별 다이버전 운동 개시 요청
운영 모델	단순 다이버전 : 아무런 부담이나 제재를 부과함이 없이 형사절차를 중단하는 방식 → 오히려 범죄의 성향을 강화시킬 위험 존재 개입형 다이버전 :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내 제재를 부과 (ex. 프로그램 참가, 사회봉사, 교육과정 참가 등) → 現 선호되고 있음

● 외국 경찰의 다이버전

美國	▷ 경찰이 소년범을 체포하거나 사건을 접수한 경우, 해당 소년에 대한 조사단계에서 경찰은 지침에 따라 선도프로그램 수강을 전제로 소년을 훈방하거나 검찰·소년법원에 송치 → 실시후 재범율 10% 수준으로 감소
英國	▷ '01.6월 경고제도(Caution) 도입 ⇨ 실시후 재범율 22.5% 감소 ▷ 비행소년 발견시 사안이 경미하고 단발성 범죄로 판단 ⇨ 부모 면접, '재차 범행시 기소가 가능'하다고 경고 후 경찰 단계에서 종결 ※ 지역소년범죄대응팀(YOT, Youth Offending Teams, 경찰관할 구역단위로 조직, 경찰관·사회사업가·보호관찰관·교육관계자 등)과 협의 → 소년사건 결정
日本	▷ 경찰석방 : 축법소년은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가능 (실무상 석방 의미) ▷ 간이송치 : 경미소년범 처리시 재범우려 없고, 형사보호처분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송치서만 월1회 가정재판소에 송부 (심리불개시 종결) ※ 가정재판소 先議主義 : 가정재판소에서 보호처분·형사처분 부과 여부 판단 ※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 귀속, 사실정위판단과 결정유기경찰

● 경찰 다이버전 도입 권고

○ UN 소년사범운영에 관한 국제연합 최저기준 규칙 (1985년, 총회채택)

▷ 제11조 “소년범인 경우 법제도의 목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소년사건을 취급하는 기관은 재량으로 정식재판 아닌 방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 UN 아동권리협약 (1991년, 한국 비준)

▷ 제40조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보고서 (2002년)

▷ “현행 소년법상 경찰의 전건송치주의는 낙인효과 및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으며 소년법 또는 형소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관련 재량권을 가지고 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마련이 필요”

● 현행법상 다이버전 ▷ 경찰의 다이버전 명문규정 不在

	▷ 소년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본조신설 2007.12.21]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의 진권사·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78년 광주지검에서 처음 시행 후 '81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전국 확대 시행 후 2007년 법제화 ▷ 경찰의 다이버전 법제화 요구 미반영
법원	▷ 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 [본조신설 2007.12.21]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의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 가·피해자가 화해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발생 초기에 시도하여야 화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화해권고제도 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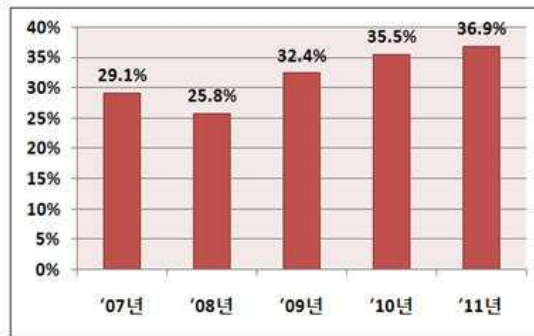
2 소년범 현황 및 처리

현황

- 소년범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범 재범율은 지속 증가
 - ※ 소년범 : '00년 143,024명 → '11년 86,643명 (재범율 : 35.4% → 36.9%)
- 사법절차에서의 낙인효과로, 제2의 범죄 촉진 등 역효과 초래
 - ※ '09년 소년범죄 사유 : 호기심·부주의 20.1%, 우발적 충돌 : 26.3%



【소년범 검거 현황】



【소년 재범율 현황】

⇒ 기존 재범방지책이나 소년범 처우 적절치 않음, 효율적 대책 필요

현행 사법처리 체계도



● 비행소년 의의 (소년법 제4조 제1항)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 *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우범소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구 분	해당 연령	처리 방법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검찰에 송치 (검사선의주의)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부 직접 송치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부 직접 송치

● 소년법원 처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 처리 대상

- 경찰서장이 송치한 촉법·우범소년 (§4 ②)
- 보호자·학교·사회복지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소년보호시설 등에서

○ 소년부 파사의 처분

● 일반 형사사건 처리

○ 검찰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검찰시건시무규칙 제143조 : 범죄혐의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유예

-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소제기** : 소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형사법원

- 18세 미만 소년 : 사형 또는 무기형 $\Rightarrow$ 15년 유기징역
-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 $\Rightarrow$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부가

⇒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년부로 송치 (§49①, 50)

● 소년범 처리 결과 분석 (2010년)

검찰	<전체 소년범(107,09명) 中> ◦ 기소 : 6.1%에 불과 (6,569명) ◦ 불기소 : 59.6% (63,740명) ※ 소년범의 47%가 기소유예 ◦ 소년부 송치 : 32.4% (34,714명) ◦ 기타 : 2%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법원	<전체 소년보호처분(32,416명) 中> ◦ 전체의 86.3%가 1호와 2~5호 병합처분 ※ 1호 단독처분은 14% (4,527명) ◦ 2·3·4·5호 단독처분은 0.6% 불과 (200명) ◦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2.9% ◦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0.25% ◦ 8~10호 소년원 송치는 0.55% (1,678명) ※ 8호 0.03%, 9호 0.27%, 10호 0.25%	

3 비행소년 통고제도

● 비행소년 통고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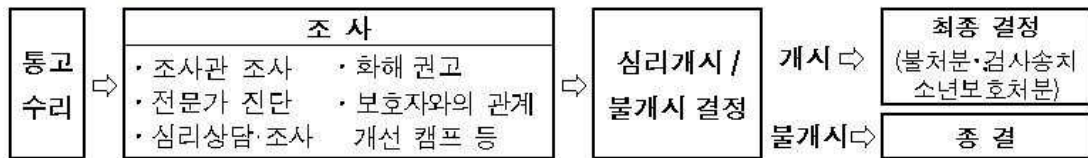
○ 개념 및 장점

- (개념) 범죄·촉법·우범소년에 대해 보호자·학교장·사회복지시설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켜, 소년법원의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등 조치

※ 소년법 제4조 제3항 범죄·촉법·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장점) △ 수사를 받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음 △ 보호자·학교·법원이 공동대응, 신속한 문제 해결 가능 △ 전문조사관 조사 및 전문가진단·심리상담조사 등 전문적 도움 제공

○ 절차



○ 처리 현황

- 비행유형별로는 범죄·우범·촉법소년이 각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 통고권자별은 학교장에 의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65.4%) 차지

구 분		총계	'07	'08	'09	'10	'11
계		130	5	20	14	34	57
비행 유형별	범죄	49	1	1	5	19	23
	우범	45	4	3	3	7	28
	촉법	36	0	16	6	8	6
통고 권자별	보호자	10	0	3	2	1	4
	학교장	85	1	7	6	30	41
	복지시설장	35	4	10	6	3	12

※ '12.6월 현재 58건/조사관 인력부족(서울가정법원 조사관 5명에 불과)으로 부실수사 우려

4 경찰의 다이버전

● 업무편람상의 훈방 요건

구 분	주요 내용
훈방권자	경찰서장 및 지구대(파출소)장
훈방대상	범죄사실 경미, 개전의 정이 현저 ※ 12.3월 '피해자 없는 경우'는 삭제
훈방요건 (각호의 1)	① 연령상 : 6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인 초범자 ② 신체상 : 정신박약·보행불구·질병자 ③ 신분상 : 주거·신원 확실, 부득이한 정상 참작의 사유 있는 자 ④ 죄질상 : 공무방해 또는 상습범이 아닌 자, 과실범 ⑤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 경미사건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계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

● 훈방권의 법적 근거

○ 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

- 경찰관이 공소장 첨부 서류(인상)가 20년 이하의 징역 구류로 규정해 놓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 (法 §3 ①)
- 즉결심판법 제19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소법을 준용토록 규정 → 형소법상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준용 가능

△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유 참작 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소

경찰시정의 재판

< 대법원 판례 1982. 6. 8 82도 117 >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방임)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법경찰관은 일체의 모든 범죄혐의에 관하여 검사에게 인지보고 하고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할 따름이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 등 처분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에게는 입건 수사하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훈계 방면하는 등에 관하여 아무 재량권도 없다는 취지의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대법관 이일규,이회장>

※ △ 인화 물질인 락카신나를 보관하다 적발(소방법 위반) △ 막걸리 내기 도박 △ 7m이하 점복 3마리 포획 등 → 경미사범 훈계방면한 사건

● 경찰 다이버전의 통제·보완장치 ⇨ '선도심사위원회'

- 필요성 : 선도조건부 훈방 또는 즉결심판, 입건여부 등을 경찰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 반영 필요
- 구 성 : 소년범죄에 대해서 종국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는 기구라는 점에서 교사, 변호사, 의사, 청소년전문가, 심리전문가 등 참여가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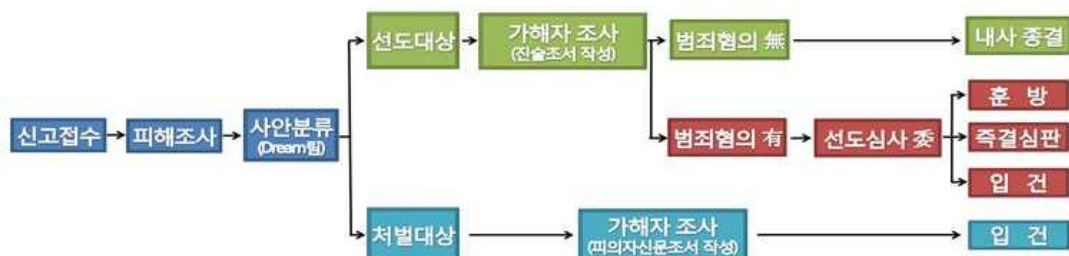
※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 인력풀」 확대

- 의사, 변호사, 교사, 소년범 조사시 참여 전문가, 청소년단체의 장 및 종사자 등 소년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경찰서장이 위촉

※ 전문가 단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인력풀 확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학교폭력 전문 정신과 의사
- 범죄심리전문가(지역 대학 심리학과 지도교수)
- B.B.S (Big Brothers & Sisters movement) 지역연맹, Cys-net 등

● 사건처리 절차



○ 「선도심사위원회」 개최(변호사·교사·의사 등 참여)

- ※ 선고형 5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 경미 초범 △ 피해자 처벌 불원 △ 반성·사과 여부 △ 전문가 참여시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방·즉결심판·입건 여부 결정

5

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

개요

- ‘사람들’을 거치는 ‘선제적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 것
- 범죄로 인해 뒤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고, 화해하고 정상적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

그간 문제점 - 현행 사법제도의 특징과 한계

- 현재 사법제도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기초, 누가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 지가 수사의 핵심 ⇒ 범죄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과 감정은 무시되기 쉬움

- 가·피해자의 만족이나 화해, 정신적 치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 ⇒ 엄중한 처벌에도 범죄와 재범을 증가 등 악순환

현행 제도와 ‘회복적 사법’ 비교

구 분	현행 사법 제도	회복적 사법 제도
주요 관점	◦ 누가 범인인가 ◦ 어떤 죄를 범했는가 ◦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누가 피해자인가 ◦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 징	◦ 범죄는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 ◦ 가해자의 상처 소외 ◦ 가해자의 처벌 중시 ◦ 범죄를 전문적·법적 언어로 이해 ◦ 범죄는 개인의 선택 ◦ 대리 전문인이 주 역할 ◦ Win - Lose 결과 추구	◦ 범죄는 사람·관계에 대한 피해행위 ◦ 가해자의 상처 인정 ◦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 중시 ◦ 범죄행위를 종합적으로 이해 ◦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역할 강조 ◦ 가해자, 피해자가 주 역할 ◦ Win - Win 결과 추구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 가해자 - 피해자 조정 / 화해 프로그램

- 조정자의 주관 아래 가·피해자가 직접 만나, 피해와 책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

○ 가족집단 회합

- 가·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까지 모여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주로 청소년 범죄사건에 활용

○ 공동체 양형

- 피해자와 가해자, 친지, 친구, 지역 원로 등이 경찰과 판사와 함께 법원이 아닌 지역센터에서 만나 문제를 해결

○ 진실과 화해 위원회

-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와 감정을 밝히고 사과하며, 가해자는 진실을 밝히는 조건으로 최대한 사면(용서)

● 회복적 사법 제도의 시작

- ▶ 1974년 캐나다 엘미라에서 수십 군데의 집을 털어 체포된 10대 2명에 대해 판사는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할 것을 판결 (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판결을 받는 조건)
- ▶ 2명은 자신들이 털 집을 일일이 방문, 사과 및 회복방안을 이행
⇒ 피해자들은 2명을 용서, 이들은 마을 구성원으로 다시 건전하게 생활

● 회복적 사법 정의의 한계 및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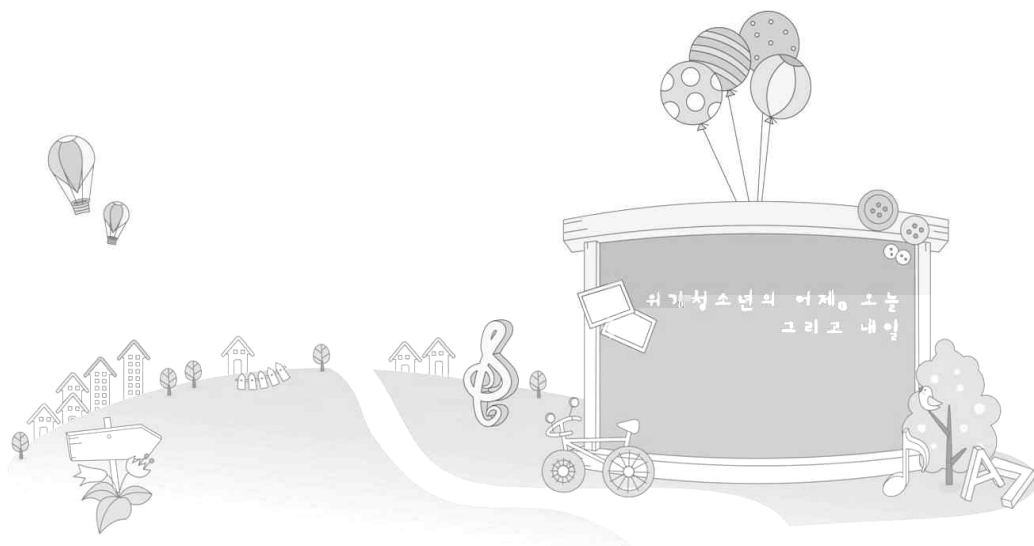
- 쌍방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 강제성 결여
- 공동체의 역할이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에는 부재 또는 약화
- 너무 약한 처벌(Soft Justice)이기 때문에 처벌회피용으로 악용 가능
-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전문인력(조정자, 프로그램 진행요원 등) 全無

위기청소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자료 4

청소년예산분야

충청남도 청소년예산 현황을 중심으로



(단위 : 천 원, %)

2014년 충청남도청소년희망포럼
「위기청소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4층(진암빌딩)
Tel. 041-554-2130 Fax. 041-552-1984

